

## 학부 장학금 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(이하 “시행세칙”이라 한다)은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장학금의 적용)** 본 시행세칙은 등록횟수가 8회(학기)이내인 대신대학교 소속의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 개정(2016.12.14.)

**제3조 (장학금의 구분)** 장학금은 교내장학금(등록금, 기금)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1. 교내장학금중 등록금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.

기금은 기금으로 적립된 재원에서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.

2. 교외장학금

교육부와 기타 국고에서 지원되어 쓰는 경비와 외부에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을 말한다.

**제4조 (교내장학금)** 교내장학금(등록금)의 종류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.

**제5조 (교외장학금)** 교외장학금중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.

**제6조 (장학금 지급 방법)** ①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 시 납입금의 일부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수혜 여부가 등록금 수납 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의 중복 수혜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우선시하여 차액에 대해서만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. (2019. 2. 1 개정)

**제7조 (장학금 지급의 제한)** ① 모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. 개정(2016.12.14.)

② 교내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,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려운 장학생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다. 개정(2016.12.14.)

③ 이중 수혜 또는 3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. 다만, 기 수혜자 중 근로장학금, 생활비(생활비 보조) 명목의 장학금, 도서 지원 장학금, 기숙사 지원 장학금, 봉사장학금,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, 학업 장려비 성격 장학금, 대가성 장학금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.

개정(2016.12.14.)

**제8조 (장학금 신청제한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
2.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서(소정양식)를 제출하지 않은 자
3.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(근로장학금에 한한다)
4.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자
5. 휴학이나 제적된 자 신설(2016.12.14.)

**제9조 (장학금 수혜 유효기간)**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한다.

**제10조 (개정)**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